

심결례연구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판결 검토: 청주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20473 판결에 관하여

Commentary on the Cheongju District Court's Ruling on the 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 Dispute

박 규 홍(Kyuhong Park)*

I. 서설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은 1960년대 KBS TV (1961. 12. 31.), TBC TV (1964. 5. 9.), MBC TV (1969. 8. 8.)가 각각 전파를 송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각 가정에 텔레비전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각 가정은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매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산악 및 해안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지상파의 방송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난시청 지역이 많았지만, 1970년대 경제발전기에는 경제 여건상 난시청 해소를 위한 중계시설 설치에 많은 자원을 분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유선으로 가정에 재송신하고, 수신료를 징수하는 형태의 유선 텔레비전방송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초기의 유선 텔레비전방송은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가 송출하는 방송전파를 수신하여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형태였는데, 지상파 방송사는 가시청 지역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고, 유선 텔레비전방송 사업자는 가입자 유치에 효과적이었으며, TV 제조업체도

수상기 판매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정부도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등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유선 텔레비전방송 산업이 발전해 왔다.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4차에 걸쳐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하여 대부분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 제도로 편입되도록 유도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 제도 도입 후 사실상 지역별 독점체제였던 유료방송시장은 2008년경 IPTV의 시장진입으로 바야흐로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시대가 열리게 되었다.¹⁾

IPTV사업자들은 2002년 위성방송 도입시 지상파 재송신을 하지 않아 시장에서 고전하였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시장진입시부터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IPTV사업자들과의 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8년부터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도 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무렵부

*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Attorney at Law, Shin & Kim)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이후로 2002년 위성방송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재송신 분쟁이 직접적으로 촉발되지는 않았다.

터 이른바 재송신 분쟁이 시작되었다.

II. 기존 재송신료 분쟁의 경위

1. 재송신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지상파 방송사들은 2008년 IPTV사업자들과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한 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의 재송신료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급기야 2009. 9.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CJ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이라 한다)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지상파 방송사의 각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지상파방송 재송신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가처분 제1심 법원은 2009. 12. 31. 지상파 방송사들의 피보전권리(동시중계방송권)는 인정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358호),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에 항고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동 가처분신청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된 채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2009. 11. 23. CJ헬로비전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 지상파 방송사의 각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지상파방송 재송신행위의 금지 및 그 예방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본안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0. 9. 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2009. 12. 18.부터 새로 종합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위 지상파 방송사가 송출하는 각 디지털 지상파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731호).

위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은 2011. 6. 2. 지상파

방송사의 지상파방송프로그램²⁾ 및 방송신호에 대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CJ헬로비전은 항고심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이후 새로 종합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위 지상파 방송사가 송출하는 각 디지털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라109호). CJ헬로비전이 다시 이의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7. 20. 동시재송신을 금지하는 기간을 2011. 8. 26. 이후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가처분결정을 그대로 인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1카합1108호).

또한, 지상파 방송사는 위 CJ헬로비전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CJ헬로비전을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10. 28. ‘CJ헬로비전은 지상파 방송의 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11카기1147호).

2.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중단사태 발생

위와 같은 일련의 법적분쟁 이후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간의 협상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2011. 11. 28.경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KBS2, MBC, SBS의 HD방송 송출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다만, HD방송 중단 사태는 양측이 2011. 12. 5. 협상을 재개하면서 8일만에 정상화되었다(그 기간 동안 SD급 방송은 송출되었으므로, 지상파 방송 시청은 모두 가능하였다).

그러나 케이블TV사업자들은 2012. 1. 16. 오후

2) 1심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아 공중송신권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프로그램을 특정하여 그에 대한 공중송신권이 인정되었다.

3시에 KBS2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송신료를 요구하여 공영방송 유료화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면서 KBS2 채널의 송출을 전면 중단하였다. 케이블TV사업자의 KBS2 방송중단사태가 발생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시간만인 2012. 1. 16. 오후 5시 30분경 정당한 사유 없이 KBS2-TV의 송출을 중단하여 방송법령을 위반한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송출을 재개하고,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협상진행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시정명령 및 5천만원의 과징금, 5백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제재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2012. 1. 16. 자 의결).

결국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일 5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재송신을 중단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CJ헬로비전은 2012. 1. 17.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티브로드, 현대HCN, C&M 등 5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순차로 HD 디지털 가입자당 월 28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송신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그 이후 재송신 분쟁의 전개

전국 단위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KBS, MBC, SBS와 MSO 간 재송신 분쟁은 2013년경에 일단락되었으나, 아직 개별SO와는 재송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개별SO들은 재송신 계약 체결시 케이블TV의 공익적 지위와 영세한 형편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민방과 지상파 방송사들은 2014년경부터 재차 개별SO를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송신료를 지급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최근 재송신료 산정의 범위를 달리하

는 본건 판결이 선고되었다.

III. 분석대상판결의 요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지역민방인 원고 청주방송과 원저작권을 가진 원고 SBS가 충북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CCS충북방송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본 사건에서, CCS충북방송은 원고 청주방송이 공중으로 송출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자신의 방송채널을 통하여 송신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재송신 행위”).

법원은 지역민방인 원고 청주방송도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지고, 방송프로그램의 원저작권을 가진 원고 SBS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재송신 행위가 방송법 제78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방송법 제78조 제1항, 제3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송신 행위가 수신보조행위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조항은 의무재송신의 대상인 KBS1, EBS에 대한 규정일 뿐이므로, 의무재송신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행위의 적법 여부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방송법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방송법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피고는 방송법 제78조 제4항을 반대해석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구역 내에서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송신 행

위는 방송관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방송권역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등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인 절차를 도입한 것에 불과하고, 동시재송신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저작권법 상의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수신보조행위 등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재송신 행위가 수신보조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재송신 행위가 방송의 송신의 영역이 아닌 수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송신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에,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의 이 사건 재송신 행위는 원고들의 송신을 보조하는 행위 또는 가입자들의 수신을 보조하는 행위를 넘어서 독자적인 방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묵시적 합의 성립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재송신 행위에 대하여 무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그 권리행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설립된 이래 아무런 협의 없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동시재송신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지상파 방송사가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특정 채널번호를 부여하여 달라거나, 지상파 방송 수신 장애 및 품질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동시재송신 현황을 조사하며, 채널운용변경허가에 대한 동의를 하는 등 재송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단지

그 기술적 방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유선방송 도입 이후 장기간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행위에 대하여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사실상 이를 묵인하여 왔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를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사이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행위에 대한 장래의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행사까지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단지 권리의 행사를 사실상 유보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배척하였다.

라. 피고의 기타 항변에 대한 판단

그 밖에 피고는 ①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였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이미 실효된 권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지상파 방송사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무료 보편적인 것이므로 피고의 재송신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i) 한정된 방송시장 및 광고시장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바, 방송시장 및 광고시장에서 피고의 점유율이나 경쟁력이 증대되면서 반사적으로 원고들의 경쟁력이 감소되어 원고들의 광고수익이 감소되거나 그 밖의 수익창출 기회나 영향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고, (ii) 게다가 피고는 원고들의 지상파방송과 피고의 유료 프로그램을 일체로 구성한 상품 전체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피고도 가입자들로부터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시청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소결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없이 원고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한 것은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저작권법 제125조).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통상이용료 인정 여부

지상파 방송사들은 통상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 및 IPTV 업체들과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자당 월 280원’을 기준으로 한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위 ‘가입자당 월 280원’은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로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가입자당 월 28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① IPTV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사이에 가설된 전송망을 통하여 방송신호를 받아 이를 가공한 후 가입자들에게 재전송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신장치가 필요한 반면, 종합유선방송은 공중으로 송신된 지상파의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이를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재송신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신장치 없이 직접 수신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이 IPTV 사업자와 정한 재송신료를 피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② 지상파 방송사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에 합의한 과정에 비추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가 제시하는 재송신료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③

‘가입자당 월 280원’을 재전송료로 결정함에 있어 고려된 요소나 결정방식에 대하여 그 근거가 전혀 드러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입자당 월 280원’이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통상이용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 인정 여부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재송신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① 피고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태양 및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재송신료 합의 경위 및 금액,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었던 방송사업의 일환이었던 점, ③ 피고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전송·선로망 등을 구축하여 난시청 해소 등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달성에 기여한 점, ④ 원고들도 피고의 동시재송신으로 인하여 광고의 노출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단가가 상승하고 광고수익이 증가하는 반사적 이익을 일정 부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가입자당 월 17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³⁾

다. 가입자 수 및 손해배상의 기간 산정

본건 판결에서,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의 방송 가입자 수를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수와 디지털 방송 가입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 법원은 이에 부수하여, 원고 청구방송의 방송은 원고 SBS의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출하는 부분과 원고 청구방송이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 청구방송의 자체제작비율이 약 30%이므로, 피고는 전체 손해배상액 중 약 30%는 원고 청구방송에게, 나머지 70%는 원고 SBS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년인 점을 감안하여 2011. 5. 1.부터의 재송신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가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IV. 본건 판결의 분석

1. 본건 판결의 의의

본건 판결은 전국 단위의 방송사업자인 KBS, MBC, SBS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상파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지역민방’이 원고로서, 역시 1개 방송구역에서만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개별SO’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앞서 전개되었던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보유한 중앙의 지상파 방송사와 복수의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규모 면에서 일정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MSO’ 간의 분쟁으로서 방송산업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와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 프로그램 사용료에 관한 분쟁으로 평가할 여지가 어느 정도 있었던 반면, 자체 콘텐츠가 빈약한 지역민방이 지역사업자로서 지역성 제고라는 공익적 임무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방송을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방송복지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개별SO를 상대로 재송신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사건이어서, 상대적으로 앞서의 사건들보다 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상당하여, 앞서의 분쟁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 어느 정도 기대되었다.

2. 최근 재송신 분쟁의 전개

가. 울산지방법원의 2015. 9. 3.자 판결

지역민방과 개별SO 간 소송으로 가장 먼저 선고된 것은 지역민방인 울산방송과 중앙 지상파 방송사인 SBS가 울산지역의 개별SO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다.

울산지방법원은 본건 판결과 유사한 취지에서 피고인 JCN울산중앙방송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울산지방법원도 본건 판결과 마찬가지로 ‘가입자당 월 28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 이 사건 재송신 행위에 관하여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저작권 등의 통상이용료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액도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본건에서 피고 JCN울산중앙방송은 반소를 제기하여 ① 지상파 방송사는 피고를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에 따라 난시청 해소 등을 위한 전송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청지역의 확대에 따라 막대한 광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고, ② 방송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송·선로망 등에 관한 설비투자를 독려하여, 피고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지방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등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결과적으로 원고 울산방송이 피고의 전송·선로망 등 시설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 울산방송의 지상파방송이 피고의 전송·선로망을 이용하여 시청자들(피고의 가입자들에 해당한다)에게 송신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울산방송은 적어도 피고의 이 사건 재송신 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가 절감하고 있는 방송 송출비용 등 제반비용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반환을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6. 1. 13.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 13. KBS 및 MBC가 각 남인천방송(주), 이룸방송네트워크,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 (주)한국케이블티브이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주)CCS충북방송, (주)서경방송, 하나방송(주), 케이씨TV제주방송과 금강방송(주)를 상대로, SBS가 금강방송(주)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각 판결은 본건 판결과 양 당사자의 주장 및 항변이 거의 유사하고, 그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동일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가입자 당 19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가입자 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재송신료 정산시 종합유선방송사의 가입자 중 아날로그방송가입자와 디지털SD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HD가입자를 정산대상으로 하되, 그중에서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무료가입자와 할인상품 가입자, 직권정지 가입자, 모니터링 가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재송신료 청구 대상 가입자 산정방식에 따라 피고의 재송신료 정산 대상 가입자수를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수를 디지털HD가입자만으로 산정하였다.

3. 본건 판결에 대한 평가

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 확인

이상과 같이 법원은 일관하여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하여 스스로 제작하여 전파를 통하여 공중에 대하여 송출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세계를 상대로 한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이를 위하여 막대한 제작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보유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여건이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본건 판결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스스로 의무형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아날로그 방송⁴⁾ 가입자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나.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적 책무에 대한 고려 필요

원래 지상파 방송은 권리보다는 의무를, 사업자의 사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공익을 중시해 온 방송매체로서 연혁적으로 공적 자원인 주파수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방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상 자율적인 방송콘텐츠 제작자가 등장하기 어렵던 시절에 국민의 방송복지적 측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여러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KBS와 EBS의 주요 재원인 방송수신료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연혁적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강력한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4) 아날로그 방송은 과거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공적 지위를 승계하는 상품으로, 매우 저렴한 방송복지적 성격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즉,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부분은 재송신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지니게 되었는바, 지상파 방송사는 모든 사람들이 준조세적 성격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 없이 무료로 방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 무료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상파방송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지리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송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가능성을 실현하여야 하며, 양질의 방송콘텐츠(프로그램)를 지역이나, 연령, 성별, 소득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 책무는 우수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일반 국민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할 의무, 즉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⁵⁾를 제공할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행사는 일반 국민의 방송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가 아무리 공적 책무를 부담하는 공익적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 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 권리행사를 제약할 수는 없다.

방송법은 이와 관련하여,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수단 및 제도로써 일정 범위 내에서 보편적 시청권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고(방송법 제76조의3),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즉 난시청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방송법 제44조). 또한, 전파법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하여 주파수지정의 방식으로 전파자원을 부여함으로써 할당대가와 같은 설권료 내지 주파수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전파사용료도 면제하는 등 지상파 플랫폼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그 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고 있다(전파법 제67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현행 법률상 해석으로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일반 시청자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에 기초한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을 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본건 판결을 포함한 일련의 법원 판단에 의하여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가격산정의 문제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공급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방송 시장에서 높은 콘텐츠 파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함으로써 가입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재송신할 경제적 수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가격, 즉 재송신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콘텐츠 파워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사는 불과 3개 사업자에 불과하여 과점 사업자라는 점, 지상파 방송 3사는 항상 공동으로 재송신료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⁷⁾ 등을 고려할 때,

5) 여기서 사용한 '방송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라는 용어는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미디어 이용권과 정보 접근기회 보장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6)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 제25호).

7) 이와 관련하여 미국 FCC는 지상파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2014. 3. 31. 지상파 방송사업자들(broadcasting stations)이 케이블TV사업자들(multichannel

시장원리에 의하여 공정하게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공동대응 부분은 케이블TV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본건 판결을 비롯하여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6. 1. 13.자 판결 등은 이러한 가격결정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⁸⁾

아울러 앞서 살펴본 지상파 방송사의 공적 책무로 인한 권리행사의 제약필요성 등의 특수한 사정들이 감안되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재송신료 분쟁은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

V. 결어

지상파 재송신은 유료방송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행위이므로, 규범적으로 보면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공급하는 행위의 일부로 평가할 여지도 있고,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공급과 별도로 유료방송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는 행위로 평가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건 판결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재송신 행위에 관하여 지상파 방송의 전송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상품에는 아날로그 상품⁹⁾과 같이 국민복지적 측면이 강조되는 상품도 존재하는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실제로 본건 판결 이전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은 아날로그 방송 상

품에 대하여 재송신료를 청구한 바가 없다).

본건 판결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하여 이러한 2가지 규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결국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경제적 가치를 과연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무형적 재산권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가치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건 판결에서는 다른 법원의 판결들과 달리 손해배상의 범위에 아날로그 가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다른 쟁점을 다투느라 가입자 수 산정에 관한 주장을 누락하여 변론주의 원칙상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2016년 11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바, 과연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MVPDs)과 재송신료에 관하여 공동협상하는 행위(Joint Negotiation)이 금지하는 규칙(안)을 제안한 바 있다.

8) 그러나, 최근 시장에 진입한 종편채널 및 MPP가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프로그램의 파괴력이 약화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도 티커머스 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지상파 인접 채널보다 비인접 채널의 수익증가율이 현저한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9) 아날로그 방송과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일방향 서비스로서 셋탑박스가 불필요한 8VSB 방식은 아날로그 방송의 공적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향후 아날로그 방송이 디지털로 모두 전환될 경우에도 이러한 방송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의무형 상품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